

종합감사

공개문

감 사 보 고 서

- 2025년 고양산업진흥원 종합감사 -

2026. 6.

고 양 시
[감 사 관]

1. 감사 배경 및 목적

고양시 자체 감사 운영 계획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의 기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 여부, 주요 사업추진의 적정성, 복무규정 준수 여부, 각종 계약 및 재산 관리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3. 감사 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확인, 사전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25. 10. 27.~10. 31.)를 거쳐 2025. 11. 3.부터 11. 14.까지 10일간 감사관 등 10명과 시민감사관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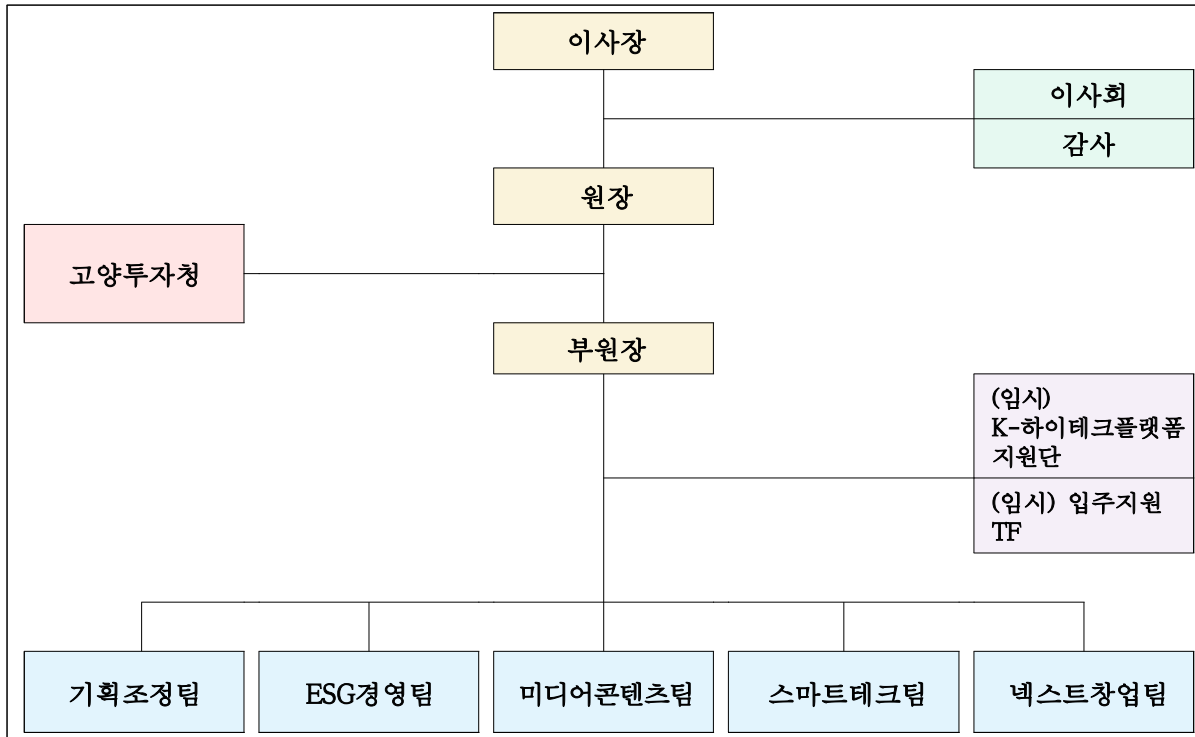
4. 감사 결과 처리

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하여 2025. 11. 13. 기획조정팀장 및 주요 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 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감사관은 확인서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심의회를 거쳐 2026년 3월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함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025. 10. 31. 기준]

1. 조직·인력 현황

○ 조직현황 : 1청, 5팀, 임시 2팀



○ 인력현황 : 정원 36명 / 현원 33명

구분	계	원장	부원장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외 (기간제)
정원	36	1	1	2	7	8	8	9	-
현원	33	1	-	2	7	8	3	12	19
과소	3		1				5	-3	

2.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출	13,674	12,958	11,928	13,044	16,241
세입	13,674	12,958	11,928	13,044	16,241

1. 총평

- 고양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고양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전문기관으로서 미래산업 추진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 조직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이번 감사에서는 복무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예산 집행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주요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계약 업무의 적정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및 미흡한 사항이 확인됨
- 특히 조직 및 인사·복무 분야에서 복무 관리와 국내 여비 지급 부적정, 징계의결 절차 및 제규정 관리 미흡, 전문직 기간제 직원 채용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계약 및 재정 관리 분야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공용차량 관리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됨
- 또한 주요 시설 및 사업 운영 분야에서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아쿠아 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 및 성사센터 원상복구 공사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연찬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명, 원)

합 계			처분 내역				
적발 건수 (처분요구 건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징 계	시 정	주 의	개 선	통 보
12 (18)	6	(환수) 7,419,430 (환급) 64,242,000	1 (1)	3	7 (5)	2	5

3. 주요 지적사항

1) 복무 관리 부적정

- 고양산업진흥원 「복무규정」 제20조 따르면 진흥원 소속 직원은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직원이 공가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복무규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가 사용이 가능함
- 그런데 진흥원 소속 직원 2명은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직원 3명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상담 및 재검진 등의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함

처분 요구	부적정하게 사용한 공가 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병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시정)
------------------	--

2) 국내 여비 지급 부적정

- 진흥원은 「여비 규칙」에 따라 관내 출장은 1만 원, 관외 출장은 2.5만 원을 지급하되, 관용차 이용 시 관내 출장은 미지급하고 관외 출장은 1/2을 감액지급 해야 하고, 근무지 간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비로 정산해야 하며, 관내 출장을 하루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합산액 1만원을 넘지 않게 지급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소속 직원이 관내 출장 시 관용차를 이용하였는데도 일비를 지급하거나 관내 출장을 하루 2회 이상 간 경우에 1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총 22건의 국내 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함

처분 요구	부적정하게 지급된 국내여비 141,800원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추가 징수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람(시정)
------------------	---

3) 징계의결 철회 부적정

- 진흥원은 「인사규정」 제39조의2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의 의원면직을 금지해야 하며, 중징계 처분 시 성과급 지급 또한 제한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던 직원 A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의결 요구를 부적정하게 철회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하였음
- 그 결과 진흥원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의 처분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함으로써 직원 A 퇴직 시 성과급 총 996,850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처분 요구	중징계 의결 중인 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부적정한 징계 절차 철회 및 면직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주의)
------------------	---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부적정

- 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구성해야 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총 6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3회는 구성 시한을 지연하였으며, 6회 모두 남성 위원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처분 요구	<p>① 특정 성별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의 추천 절차를 보완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적정한 위원회 구성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람(통보)</p> <p>② 임기 만료 전 후임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람(주의)</p>
------------------	--

5) 전문직 기간제 직원 채용 부적정

- 진흥원은 전문직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직원 관리 규칙」에 따라 ‘최종경력 퇴직 후 3년 미경과’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총 12건의 채용 공고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누락 하였으며, 그 결과 20××년 제×차 전형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자(1명)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처분 요구	① 「기간제직원 관리 규칙」에 따른 응시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 빠짐없이 명시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주의)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	---

6) 「징계규칙」 등 제규정 관리 업무 부적정

- 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의 개정 사항이 상급기관에서 통보되면 위 지침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제규정을 제정·개정 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기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동일하게 진흥원 「징계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위 지침상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는 비위(음주운전, 성범죄, 성매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위 등)에 대하여 진흥원 「징계규칙」 상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위 지침에서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에 대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 별로 기관장이 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진흥원 「채용규칙」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험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제규정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흥원 「징계규칙」 및 「채용규칙」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람(제도상 개선)
------------------	---

7)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 업무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및 진흥원 「계약규정」 제13조 따라 공정 경쟁 및 계약 이행을 해친 자에게 2년 범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기관장은 지사체장에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5-다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선금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 청구해야 하며, 특히 업체 귀책일 경우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20××년 ‘ㄱ 용역’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선금 반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고 청구함

처분 요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미가산된 선금 이자 24,170원을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계약 해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람(시정)
------------------	---

8) 공용차량 사적 사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및 「고양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용차량은 공무 목적에 한하여 사전 신청 및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운행해야 하며, 운행 종료 후에는 열쇠를 즉시 반납하고 차량 운행 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그런데 B는 20××. ×. ×.부터 20××. ×. ××.까지 총 차량 운행 거리 12,744km를 맞추기 위해 많게는 131km에서 적게는 5km를 부풀려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338건을 실제 공무상 운행거리와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총 338건 중 전임 직원(5명)이 작성한 117건의 운행 대장 기록을 수정하여 재작성함
- 또한 ㄴ 업무를 위해 임차한 공용차량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출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38회에 걸쳐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함

처분 요구	<p>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전임 직원의 과거 운행대장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수정한 B를 고양산업진흥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하시기 바람(징계)</p> <p>② 공용차량 사적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 사용 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 및 운행 관리 책임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차량 관리 시스템을 개선(통보)</p> <p>③ 「차량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주의)</p>
------------------	---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 진흥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또한 진흥원은 고양시로부터 최소 인원(7인) 미만으로 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통보받은 바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상위 지침에 따른 내부 규칙 개정 없이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총 3개 사업의 평가위원회를 최소 인원(7명)에 미달하는 5명만으로 개최함
- 특히 ‘ㄷ 사업’ 평가위원 공개 모집에서 자격 미달자 2명을 포함한 최종 7명을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5명만으로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운영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처분 요구	<p>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제도상 개선)</p> <p>②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주의)</p>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진흥원은 총공사비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도급금액에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하며, 이를 노무자 안전 시설비·보호구 구입 등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또한 진흥원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20××년 ‘르 공사’ 준공 시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화 구입 내역과 실제 현장 사진이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금액 총 6,969,860원을 추가 지급함

처분 요구	진흥원은 안전화 구입비로 추가 지급된 계약금액 6,969,860원을 환수 조치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를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통보(시정완료)]
------------------	---

11)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 부적정

- 진흥원은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진흥원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조 사용 시 16일 이상 30일 이하는 15%, 31일 이상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함
- 또한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스튜디오 3일 이상 사용 시 사용시설의 1일 사용가격(정가)를 보증금으로 부과해야 함
- 그런데 진흥원은 20××년과 20××년 수조 사용료에 대한 기간 할인 시 4건에 대해 규정보다 낮은 할인율(기간별 10% ~ 15%)을 적용하여 사용료 64,242,000원을 과다하게 징수함

- 또한 20××. ×. ×. ○○ 대형수조 사용 계약 시 보증금 42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20××. ×. ×. □□ 실내스튜디오 사용 계약 시 보증금 264만원 대신 132만원만 부과하는 등 총 19건(미부과 14건, 과소부과 5건)에 대하여 보증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①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8조와 다르게 과다 징수한 스튜디오 이용료 64,242,000원을 해당 업체에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튜디오 이용료 및 보증금 부과 업무를 운영 규칙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	---

12) 성사센터 기업입주실 원상복구 공사 폐기물 처리 부적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착공 전까지 관할 구청에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함
-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인계서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진흥원은 □ 용역을 추진하면서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처리계획 신고필증 제출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지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음

-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산정보 입력이나 간이인계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등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①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공사·용역 발주 시 폐기물 처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건설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없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통보)

IV

시민감사관 의견

1. C 시민감사관 의견

- 참여 일 : 2025. 11. 10.(월)
- 지적사항 및 의견

□ 복무규정 운영 관련 의견

- 복무규정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복무규정 제28조(시간외 근무 제한) 및 제7장(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어 해당 규정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람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관련 휴가 등 가족 관련 휴가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D 시민감사관 의견

- 참 여 일 : 2025. 11. 11.(화)
- 지적사항 및 의견

□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 및 관리 강화 의견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위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 위 지침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누락 또는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운영, 운전경력 증명 확인 등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진흥원 징계규칙에도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듯이 직원 음주운전에 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가 필요함

3. E 시민감사관 의견

- 참 여 일 : 2025. 11. 11.(화)
- 지적사항 및 의견

□ 고양산업진흥원 조직 관리 및 규정 정비 의견

- 제규정집(조례, 정관, 규정, 규칙, 업무지침, 강령) 검토를 통해 업무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 본 감사 결과 진흥원의 제규정은 전반적으로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다만 현재 진흥원은 현원 52명(기간제포함) 규모에 비해, ①지역산업 조사·연구 및 지원 전략 수립 ②지역기업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 등 비즈니스 활동 지원 ③기업유치 및 지원 시설·장비 운영 ④투자조합 기금 결성 참여 ⑤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⑥중앙정부·지자체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⑦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발굴 및 융합 생태계 구축 등 사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현재의 인력으로 모두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자율적 규정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직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함

1.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추진

□ 추진배경

- 민간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글로벌 진출 등 후속성장 지원이 결합된 지역형 스타트업 성장모델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명: 고양형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고양형 TIPS)
- 추진기간: 2024년 ~ 현재(누적 10개사 지원)
- 지원내용: R&D 사업화 자금 지원 및 IR 데모데이, 글로벌 VC 매칭 등 후속 투자 연계

□ 추진사항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형 TIPS 밋업 & 네트워킹 데이」 개최(6개 참여기업 IR 피칭 및 투자자(VC·AC) 대상 상담 진행) · 글로벌 VC 매칭 컨설팅을 통해 대만·일본 등 해외 투자자와 교류 및 후속투자 검토 추진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형 TIPS-스타트업 815 연합 IR」 개최(6개 기업 IR 피칭 및 홍보 쇼케이스 운영) · 대만 Starsphere 2025 참가 연계, 현지 VC·엑셀러레이터와 네트워킹을 통한 해외투자 진출 기회 제공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연계 활동을 통해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투자기관과의 협력 기반 강화

□ 추진효과

- 후속투자 총 76억 원 유치, 지식재산권 취득 30건 이상, 업무협약(MOU) 체결 10건 이상, 신규 고용 30명 이상 창출
- 고양시 본사 이전 1개사(성남→고양), 지점 설립 1개사, 공장 확장 이전 1개사(고양시 통일로), 해외 지사 설립 1개사(중국)
- 싱가포르·대만 등 해외 VC 네트워킹 확대,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 * 싱가포르 VC Innovate360으로부터 Pre-시리즈A 투자유치
- 민·관·투자기관 협력 기반의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으로 기업 성장 견인 및 공동체 치안 공헌

□ 추진배경

- 시민 수요와 참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첨단 AIoT 스마트 시티 기술을 현장에 적용·실증하여 고양형 스마트시티 발굴 및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명: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 운영기간: 2018년 ~ 현재
- 지원내용: 시민 중심 도시문제 발굴 및 기업의 A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지원

□ 추진사항

- 2018년부터 25년까지 총 16건의 도시문제를 발굴, 총 23건의 서비스 솔루션 실증 추진
 - * 해당 솔루션을 토대로 2025, 2023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어워즈 도시부문 수상
- 시민과 함께 추진한 초등학생 도로 안전 확보 서비스, 역주행 방지 스마트 안내판, 배회노인 감지 서비스 등은 지역사회 치안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 주관 ‘2025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25. 10.)
- 고양시 실증 레퍼런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3년 조달청 ‘신규혁신 제품 지정’ 3건, 2024년 ‘우수 조달 제품’ 등록 1건
 - * 목포시, 무주군, 음성군, 이천시 등 타 지자체 확산
- 그 외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 챔피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장관상 등 다수 수상

□ 추진효과

- 시민 체감형 고양 스마트시티 서비스 지속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견인 및 서비스 확산을 통한 고양 스마트시티 브랜드 강화

1. 감사결과 처리

-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 통보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2. 지적사항 결과처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사항 이행결과 제출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 확보

붙임 2025년 고양산업진흥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12부. 끝.